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2. 3. 7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2. 3. 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02. 3. 1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김용수)

□ 제안이유

○ 음식물쓰레기의 분리 배출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일반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반입 및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객실면적이 100㎡가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 이외의 모든 중소형 음식점을 “음식물쓰레기감량장려사업장”으로 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및 제6조의2)

○ 재활용촉진 민간창구를 설치하여 대시민 홍보를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정함(안 제8조제4항)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대행업자의 범위와 처리수수료와 부과·징수방법을 구체화하여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세입처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3)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외의 모든 중소형 음식점을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으로 정하고 감량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데 위반시 행정조치라든지 구속력이 있는가?	○ 행정조치 등 구속력은 없으나, 권고는 할 수 있음
○ 행정조치는 못하고 구속력도 없는데 굳이 조례로 규정하는 이유는?	○ 상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재활용촉진 민간창구를 설치하는 이유는?	○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시민홍보를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임
○ 민간창구를 설치하고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확보에 이상없는가?	○ 이상없음

- 홍보는 시장이 해야지 민간단체를 이용하면서 재정지원을 하려는 이유는?
-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자보다도 수집·운반처리업자인 수요자가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남은음식물사료화모임에서 현재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홍보 비용만이라도 지원해서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임
-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로 재이용하는 농·축산가를 일제조사하여 최대한 찾고자 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6호
의결년월일	2002. 3. 20 (제94회)

제출년월일 : 2002. 3. 7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음식물쓰레기의 분리 배출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일반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반입 및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객실면적이 100㎡가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이외의 모든 중소형 음식점을 “음식물쓰레기감량장려사업장”으로 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및 제6조의2)
- 재활용촉진 민간창구를 설치하여 대시민 홍보를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정함(안 제8조제4항)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대행업자의 범위와 처리수수료와 부과·징수방법을 구체화하여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세입처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3)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조리 전 다듬고 버리는 식품 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으로 하고 동조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음식물쓰레기감량장려사업장(이하 “감량장려사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2호에서 정한 의무사업장 이외의 모든 중·소형음식점을 말한다.
- 8.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은 부천시 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구역별 분리배출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시장이 고시한다.

제5조제1호 중 “시장이 정하는 배출 방법에 따라”를 “별표1의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요령”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감량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감량장려사업장에 대하여도 제6조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게 하거나 감량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음식물쓰레기감량장려사업자의 준수사항) 감량장려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을 추진하는 시책을 적극 실천하고 자체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④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고 대시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의 민간재활용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①시장은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 법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 2. 법 제2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 3. 사료관리법 제8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비료생산업 등록자
- 4.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로 재이용하는 농·축산가
- 5.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자 또는 운영자

③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에서 오수 및 악취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이나 밀폐된 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지역에서 수집된 음식물쓰레기 또는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재활용사업자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용지역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3과 같이 하되 월 단위로 징수하며, 납기개시 5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대행) ①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징수·납부를 대행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대표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징수·납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자 또는 대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징수·납부를 대행한 때에는 시장 또는 수집·운반·대행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세입처리 등) 시장이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한 때에는 수수료를 시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집·운반·처리한 때에는 이를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면제) 시장 또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대행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5리터 용량 기준으로 20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자
-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별표1의 제목 중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4조 관련)"을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요령(제5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목 중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제7조 관련)"을 "음식물쓰레기관리대장(제7조 및 제7조의2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방법(제12조 관련)

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시 산정방법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9조제2항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산정방법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을 기준으로 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필요시 수거·운반·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평균하여 별도 산정·부과할 수 있다.

○ 공동·단독주택의 경우 : 세대당 월 2,000원 미만

○ 감량 의무사업장의 경우 : 킬로그램당 50~85원

○ 감량 장려사업장의 경우

• 기본료 : 1일 20리터 종량제봉투 사용가격을 기준하여 연동제로 별도 고시

• 기본량 초과시 : 킬로그램당 50~85원

다. 시 자원화시설 처리 수수료

월간배출량×킬로그램당 처리비용

※ 킬로그램당 처리비용은 별도기준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장(제11조 관련)

배출지역 :

○ 주 소 :

○ 성 명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u>먹고 남긴 음식찌꺼기</u> 등을 말한다.</p> <p>2. (생략)</p> <p>(신설)</p> <p>3.~6.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p> <p>1.</p> <p>.....<u>조리 전 다듬고 버리는 식품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u> 등.....</p> <p>2. (현행과 같음)</p> <p>3. "<u>음식물쓰레기감량장려사업장(이하 "감량장려사업장"이라 한다)</u>"이라 함은 제2호에서 정한 <u>의무사업장 이외의 모든 중·소형음식점을</u> 말한다.</p> <p>4.~7. (현행과 같음)</p> <p>8. "<u>공동주택</u>"이라 함은 <u>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와 범위를</u> 정하는 <u>주택</u>을 말한다.</p>
<p>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u>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u> 정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u>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u> 정할 수 있다.</p>	<p>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u>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은 부천시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구역별 분리배출 시행시기에</u> 대하여는 <u>시장이 고시한다.</u></p>
<p>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생략)</p> <p>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u>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u>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2. (생략)</p>	<p>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현행과 같음)</p> <p>1.</p> <p>.....<u>별표 1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요령으로</u>.....</p> <p>2. (현행과 같음)</p>

(신설)

제6조의2조(감량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감량장려사업장에 대하여도 제6조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게 하거나 감량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7조의2조(음식물쓰레기감량장려사업자의 준수사항) 감량장려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을 추진하는 시책을 적극 실천하고 자체적으로 별자 제2호서식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③(생략)

제8조(음식물쓰레기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③(현행과 같음)

④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하여 이를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고 대시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의 민간재활용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생략)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신축되는 공동주택.....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3과 같이 산정하되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①시장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쓰레기를 재환용하는 경우에는 재환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필요시 수거·운반·재환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산정 부과할 수 있다.

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시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환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환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3. 사료관리법 제8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비료생산업 등록자
4.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로 재이용하는 농·축산가
5.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자 또는 운영자

③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에서 오수 및 악취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이나 밀폐된 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잠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 수집된 음식물쓰레기 또는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재환용사업자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운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생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용지역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3과 같이 하되 월 단위로 징수하며, 납기개시 5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대행) ①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징수·납부를 대행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대표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징수·납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징수·납부를 대행한 때에는 시장 또는 수집·운반 대행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3(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세입처리 등) 시장이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한 때에는 수수료를 시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2

(신설)

함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집·운반·처리한 때에는 이를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12조의4(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면제) 시장 또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5리터 용량 기준으로 20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등에우대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별표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4조 관련)

[별표1]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요령
(제5조 관련)

[별표3]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방법
(제11조 관련)

[별표3]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방법
(제12조 관련)

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

-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9조제1항제3호 별표6의 규정에 의한다.

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시 산정방법

-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9조제2항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을 기준으로 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필요시 수거·운반·재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비용을 별도 산정·부과할 수 있다.

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산정방법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을 기준으로 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필요시 수거·운반·재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평균하여 별도 산정·부과할 수 있다.

- 수거·운반·재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 : kg당 50~85원의 비용을 부담
- 공동주택의 경우 : 가구당 월간 1,000~2,000원의 비용을 부담

(별지 제2호서식)

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관리대장
(제7조관련)

(별지 제4호서식)

- 공동·단독주택의 경우 : 세대당 월 2,000원 미만
-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 : 킬로그램당 50~85원
- 감량장려사업장의 경우
 - 기본료 : 1일 20리터 종량제봉투 사용가격을 기준으로 연동제로 별도 고시
 - 기본량 초과시 : 킬로그램당 50~85원

다. 시 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

- 월간배출량×킬로그램당 처리비용
- ※ 킬로그램당 처리비용은 별도기준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쓰레기관리대장
(제7조 및 제7조의2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별지와 같이 한다.